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4. .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6월 21일, 김선교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6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 9. 02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6. 3. 24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3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 3. 26.) 상정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선교 의원)

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2항제4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조문상 전문위원)

개정안들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하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, 특히 한정애의원안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.

공무원의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가정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[1]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현행 공무원과 같이 “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”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적정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: 윤건영의원)

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,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---

1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